

◆ D-14 업무상재해로 장기치료중인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및 퇴직금산정방법은 ?

근로기준법 제30조 제2항에 의하여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후 30일간은 어떠한 경우라도 해고하지 못하도록 해고제한을 받고 있음. 그러나 공사계약기간에 따르 기간을 정한 일용근로자의 경우 당해공사에만 근로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공사기간만료로 근로계약이 자동해지되므로 해고제한을 적용받지 아니하므로 공사종료일(근로계약만료일)에 퇴직된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퇴직금 = 계속근로연수 (재직일수/365) x 30일 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바, 기간을 정하여 사용한 일용근로자, 해외파견근로자등은 근로계약만료일까지만을 계속기간으로 산정하여야 함.